

1. 개정이유

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경·소형 승합·화물차(사업용 화물차 제외)의 경우,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에서 4년 이후로 변경(안 별표 25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5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차종		정밀검사대상 자동차	검사유효기간
비사업용	승용자동차	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	2년
	경형·소형의 승합·화물자동차	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	1년
	그 밖의 자동차	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	
사업용	승용자동차	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	
	경형·소형의 승합자동차	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	
	그 밖의 자동차	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	

별표 25 제2호 중 ““승용자동차“란”을 “차종이란”으로, “자동차를 말하며, “기타자동차“란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”를 “자동차 종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차의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

별표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